

의안번호	2200233
의 퇴 인	배준영 의원
회 답 일	2024. 6. 14.
추계번호	24B0348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초조사,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할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8억 1,700만원(연평균 7억 6,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 중 비용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초조사	238	—	—	—	—	238	48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	1.8	1.8	1.8	1.8	1.8	9	1.8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	952	952	952	714	3,570	714
계	239.8	953.8	953.8	953.8	715.8	3,817	763.8

주: 1. 향후 연구용역 계약 단가의 증감, 실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제6조(사업비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자·출연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3	제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재량규정
4	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제11조(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경제·산업·인문·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제12조(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7	제13조(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공항경제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제1항)	의무규정
8	제14조(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제21조(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함(제1항)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항운영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의무규정
10	제2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업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제3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제3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운영자 4. 지방공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재량규정
13	제38조(비용의 부담 등)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및 출자·출연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함(제4항)	의무규정
14	제43조(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항경제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기금은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재원 확보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제6조(사업비의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현재 공항경제권 개발 관련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한계
3	제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현재 공항경제권 개발 관련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대상과 감면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한계
4	제13조(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시·도 산하 공항경제권지원단의 규모, 구성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 검토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비용추계에 한계
5	제21조(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현재 공항경제권 개발 관련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신규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토지 등 손실보상금 및 수용·사용금액, 원형지 공급, 공항경제권 기금 조성규모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제2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7	제3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8	제3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9	제38조(비용의 부담 등)	×	
10	제43조(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	
11	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2	제11조(기초조사)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3	제12조(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4	제14조(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8조의 공항경제권 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11조의 기초조사, 안 제12조의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안 제14조의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기초조사(안 제11조)
 - 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 중 첫 해에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가정
 - 기본계획 수립 시 안 제11조의 기초조사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억 3,8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4,800만원)

[표 2] 항공 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	예산액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20~2024년) 수립방안연구	200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6년) 수립 연구	500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023~2032년) 수립 연구	150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연구	100
평균	237.5

자료: 국토교통부

[표 3]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안 제8조 및 제11조)	238	-	-	-	-	238	48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안 제12조제4항)
 - 관할 시·도지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항의 공항운영자
 - 항공·도시계획·교통·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다만,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위원 구성 규정을 참고하여 공항경제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20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운영중인 공항은 15개로 관할 시·도는 13개¹⁾
 - 강원 2개(양양, 원주공항), 전남 2개 (무안, 여수공항)
 - 나머지 시·도 각 1개

[표 4]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구성(안)

(단위: 명)

구분	구성 인원	인원	비고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1	
위원	관할 시·도지사	13	공무원 (16)
	국토교통부 등 고위공무원단	2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항의 공항운영자	2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자(2)
	항공·도시계획·교통·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	비공무원 (2)
합계		20	

자료: 제정안의 위원 구성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항경제권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공항경제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정책·국토정책·도시재생·도시개발·국가공간정보 등 유사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참고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9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80만원)

1)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내 공항시설 현황」, 2023.12.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14쪽)

[표 5]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추계: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2	2	2	2	2	—	—
회의 개최횟수(B, 회)	3	3	3	3	3	—	—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 (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D=A×B×C, 백만원)	1.8	1.8	1.8	1.8	1.8	9	1.8

주: 실제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의 변동에 따라 추계금액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안 제14조)

- 안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15개 공항의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실시한다고 가정

[표 6] 국내 공항시설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연번	공항명		소재지	시도
1	인천	국내 국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
2	김포	국내 국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서울
3	김해*	국내 국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
4	제주	국내 국제	제주시 공항로 2	제주
5	광주*	국내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
6	대구*	국내 국제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
7	청주*	국내 국제	충북 청원군 내수읍 오창대로 980	충북
8	무안	국내 국제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전남

연번	공항명		소재지	시도
9	양양	국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	강원
		국제		
10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
11	포항경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경북
12	사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경남
13	여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전남
14	군산*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동길 2	전북
15	원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강원

주: * 표시는 민·군 공동사용공항,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사천, 원주(공군), 포항(해군), 군산(미군)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내 공항시설 현황」, 2023.12.

-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공항경제권종합발전 기본계획과 동일한 2억 3,800만원으로 가정
-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은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다음 연도부터 4년간 나누어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
-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5억 7,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7억 1,400만원)

[표 7] 공항별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비용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사업계획 수립 시·도 수(A)	—	4	4	4	3	—	—
정책연구용역 수립비용(B)	—	238	238	238	238	—	—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수립 비용(C=A×B)	—	952	952	952	714	3,570	714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 및 연도별 계획수립 시·도 수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및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용역 단가의 변동,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실제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의 변동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